

건설업관련 법령 별칙 편람

자료제공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6월호 게재내용

- I. 별칙개요
- II.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별칙

III.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별칙

[1]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별칙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미수료 ◎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법제6조제2항 법제43조제1항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때	법제6조제3항 법제43조제1항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 건설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건설업자	법제6조의3제1항 법제43조제1항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감리 및 설계등 용역업무의 성실의무위반 ◎ 책임감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등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설계등 용역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제20조제2항 법제41조제1항 법제41조제2항	• 10년이하 징역 •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업무상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	법제41조의2제1항	• 5년이하 징역,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제41조의2제2항	• 10년이하 징역, 금고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
☒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제21조의4제1항 법제21조의5제1항 법제42조의2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법제25조제2항 법제43조제1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변경사항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변경등록한 경우	"	"
☒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법제25조제1항 법제42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	법제26조의2제2항 법제42조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한 경우	법제28조제1항 법제43조제1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변경등록한 경우	법제28조제2항 법제43조제1항	"
☒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법제28조의4제2항 법제42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업무정지명령 위반 ⊙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이 책임 감리를 한 경우	법제30조제1항, 제2항 법제33조제1항 법제43조제1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기간중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한 경우	법제30조제3항 법제43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감리전문회사의 보고의무 위반 ⊙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치 않은 경우	법제32조제2항 법제43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감리전문회사의 사무실·공사현장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	법제32조제2항 법제42조의2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법제38조 법제42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2]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기준(시행령 제54조의8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1.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가.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망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나. 주요구조부가 부실시공되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 다. 인근의 주요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제33조제1항제1호	12월 6월 3월
2.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한 때 나.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때	법제33조제1항제2호	3월 1월
3. 품질관리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한 것을 묵인한 때 또는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법제33조제1항제3호	2월
4. 안전관리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가. 다수의 인명피해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제33조제1항제4호	3월 1월이내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시공될 우려가 있을 때 가.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 나.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이외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제33조제1항5호	2월 1월
6. 법 제23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할 때 가.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도록 하게 한 때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한 때	법제33조제1항6호	2월 1월

건설업관련 법령 발칙 편람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업무정지기간
7.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수첩을 대여한 때	법제33조제1항제7호	8월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제33조제1항제9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9.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33조제1항제10호	"

[3]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업무정지기간
1.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 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한 때	법제6조의4제1항제1호	12월
2.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법제6조의4제1항제3호	
가.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8월
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		6월
다.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주요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4월
라. 시공관리의 소홀로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월
3.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법제6조의4제1항제4호	1월
4. 법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6조의4제1항제5호	2월
5. 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법제6조의4제1항제6호	
가. 품질시험을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시험빈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3월
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3월
다. 시험회수, 시험실면적 및 시험·검사요원이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월
6. 법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법제6조의4제1항제6호의2	3월
7. 법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을 3회이상 받은 때	법제6조의4제1항제7호	2월
8. 법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법제6조의4제1항제8호	2월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업 무 정 기 기 간
가. 공사비가 당초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발주청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시킨 때		3월
나.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시킨 때		1월
다. 현장의 시공여건을 무시하고 설계를 함으로써 주요 구조물의 시공위치를 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게 설계한 때		1월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4호	
가.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		2월
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1월
5.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5호	2월
6. 법 제23조의제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6호	
가. 설계도면·공사시방서 등을 기준에 맞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장기술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하여 주요구조부의 상당부분을 잘못 시공하게 한 때		1월
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월
다.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월
7.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준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7호	1월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8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정지기간 준용
9.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0조의4 제1항제9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정지기간 준용

비고 :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의 손괴"라 함은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발생한 허용치이상의 균열 또는 붕괴 등 중대한 결함을 말한다.

[5]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제13조의6제1항관련)

1. 용어의 정의

1)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설계등 용역업자(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

술자(설계등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경감점수”라 함은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받은 부실벌점에서 제5호의 부실벌점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도록 한 점수를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2)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4)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5)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6)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7)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8)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3.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1) 당해 반기에 동일업체의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회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당해 점검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회수로 나누어 평

균한 부실벌점을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평균 부실벌점으로 한다.

2) 누계평균 부실벌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3년간의 평균부실벌점을 합계하여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4. 부실벌점의 관리 및 적용

1)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에는 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에는 2점,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3점을 각각 감점한다.

2) 부실벌점은 매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3) 부실벌점을 불이익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최초의 시기는 업체의 경우에는 1996년 9월 1일이고 건설기술자 등의 경우에는 1997년 9월 1일로 한다.

4)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당해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가목 내지 다목의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부실벌점을 책정하고 경감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제5호 라목의 주요경감사례를 기준으로 경감한 후 그 결과를 벌점부과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실벌점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및 건설

기술자들은 부실벌점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측정기관은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6) 이의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

부실벌점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부과한다.

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1	◇ 토공사의 부실	2 또는 3
	- 설계도서(관련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기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으로 인한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의 발생에 대하여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1
1.2	◇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3 2 1
	- 주요구조물의 균열이 0.3mm이상 발생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주요구조물의 균열이 0.2mm이상 0.3mm미만이거나 균열이 부재(部材)당 3개소이상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 기타 구조물의 균열이 0.3mm이상이거나 균열이 부재당 3개소이상 발생한 경우	1
1.3	◇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3 2 1
	- 주요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2㎡이상이거나 철근노출이 발생한 경우	
	- 주요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이상 0.2㎡미만인 경우	
	- 기타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이상인 경우	1
1.4	◇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상태의 불량	3 2 1
	- 주요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개소이상 필요한 경우	
	- 주요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5	◇ 배수상태의 불량	3 2 1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을 상실한 경우	
	-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1
1.6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3 1 또는 2
	-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또는 2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7	◇건설공사후 발생한 폐자재의 처리상태 불량 - 불량 건설폐자재를 이용한 성토나 불량 건설폐자재를 무단으로 폐기한 경우 -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8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한 시공 -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감리원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경우	2 또는 3 1
1.9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 주요구조부의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3 2 1
1.10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감리원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를 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 또는 3 1
1.11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의 발생 - 환경오염(수질·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 공사수행과정에서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1.12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설치상태의 불량 -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주요구조물에 대한 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의 구조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3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4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질보증계획을 또는 품질시험실시의 미흡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5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시험요원 확보의 미흡 -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시험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시험실·장비나 시험요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2 1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6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 건설기계·기구의 설치관련 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2 1
1.17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불량 -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몰타기를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8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상태의 불량 -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아니한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몰타기를 할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장비결합사항을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9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 시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
1.20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분보수가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1.21	◇계측관리의 불량 -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 특별시방서상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3 2 1

나.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2.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주요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기타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타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3 2 1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경우	
2.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나 감리원의 승인없이 이를 시행하는 경우 - 기타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1
2.3	◇기성 및 예비준공검사의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 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3 2
2.5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 - 설계도서의 확인 잘못으로 시공후 주요구조부 또는 전체공사비의 10% 이상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7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불철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성실하지 아니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리시험중 일부종목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3 2 1
2.8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 레미콘·철근(KS제품을 제외한다)등 주요 자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레미콘·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2 1
2.9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 점
2.9	- 제출서류 처리지연으로 공정차질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3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10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1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1 또는 2
2.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변경하거나 50%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	2 또는 3
	- 동일 분야의 감리원을 상당한 이유없이 3번이상 교체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1 또는 2
2.13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또는 2
2.14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의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이나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다. 설계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 실 내 용	벌 점
3.1	◇ 각종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의 발생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2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3.2	◇ 토질·기초조사의 잘못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 점
3.2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조사의 잘못으로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 경미한 설계변경사유가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
3.3	◇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의 발생	
	- 주요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 기타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1
3.4	◇ 구조·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 주요구조물의 전면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3
	- 주요구조물의 부분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2
	- 기타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1
3.5	◇ 수량산출의 잘못	
	- 공종별로 10%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공종별로 10% 이상 수량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3.6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설계도서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기준에 미달한 경우	3
	- 설계도서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의 실정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2
	-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1
3.7	◇ 자재선정의 잘못으로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3
3.8	◇ 용역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	
	- 참여예정기술자가 실제의 과업수행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1 또는 2

라. 부실벌점경감기준

(1) 시공능력평가, 우수업체 및 표창 등에 대한 부실벌점의 경감은 당해 반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표창은 1개로 적용한다.

(2) 4.1사례 내지 4.4사례는 당해 현장에 대하여

경감하고, 4.5사례 및 4.6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하여, 4.7사례 및 4.8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한다.

(3) 5.1사례는 당해 현장에 대하여 경감하고 5.2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하며 5.3부실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한다.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4) 6.1사례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 경감하고
6.2사례 및 6.3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

실벌점에서 경감하며 6.4사례는 최종집계한 평
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한다.

번호	주요경감 사례	경 감 점 수
4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4.1	- 최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2
4.2	- 구조물에 대한 최신기법 계측관리를 철저히 한 경우	1
4.3	- 최신 공사관리기법을 적용한 경우	1
4.4	- 매몰부분 및 완성구조물 검측 등의 기록(사진 등)을 철저히 한 경우	1
4.5	- 시공능력 평가결과 당해 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이상인 업체인 경우	1
4.6	-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4.7	- 우수건설업자로 선정된 경우	3
4.8	-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 4.5사례 및 4.7사례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 사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4.5사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5.1	- 최신관리기법을 적용한 경우	2
5.2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5.3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6	◇ 설계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6.1	- 최신공법을 적용한 경우(당해 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6.2	- 설계등 용역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인 경우	3
6.3	- 설계업무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6.4	- 설계업무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 6.2사례는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시행규칙 제40조의2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처 분 내 용
1. 시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30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최근 3년간 5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30조제1항제2호	"
3. 업무정지기간중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한 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때를 제외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
4.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제30조제1항제4호	"
5. 임원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처 분 내 용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하게 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제30조제1항제6호	12월이내 업무정지
7. 최근 1년간 동일 건설공사장에서 법 제21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은 때	제30조제1항제7호	2월이내 업무정지
8.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 가. 부실시공으로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 다.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인근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제30조제1항제8호	8월이내업무정지 4월이내업무정지 2월이내업무정지
9. 2년이상 책임감리의 실적이 없을 때(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미리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가. 3년이상 책임감리실적이 없는 때 나. 2년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때	제30조제1항제9호	등록취소 8월이내업무정지
10. 감리원자격이 없는 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제30조제1항제10호	3월이내업무정지
11.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등의 요청이 있는 때	제30조제1항제11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정지기간준용
1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제30조제2항제2호	2월이내업무정지
1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제30조제2항제3호	6월이내업무정지
14.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 나.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때	제30조제2항제4호	2월이내업무정지 1월이내업무정지
15.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0조제2항제5호	2월이내업무정지
16. 소속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제30조제2항제6호	1월이내업무정지

* 설비 *